

장학규정

제정 : 2016.11.01
개정 : 2019.07.10
개정 : 2020.03.01
개정 : 2020.09.01
개정 : 2021.12.01
개정 : 2022.05.01
개정 : 2022.10.01
개정 : 2023.02.15
개정 : 2023.09.01
개정 : 2023.10.16
개정 : 2024.03.01
개정 : 2024.10.01
개정 : 2025.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별도의 기준이라 함은 장학금 지급 기관 및 단체의 특정한 지급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01.>

제3조(사무관장) 장학사무는 입학학생취업팀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0.03.01., 2022.10.01., 2023.10.16.>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구성) ①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01.>

② 위원회는 입학학생취업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미래전략처장, 사무처장, 국제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총장이 임명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7.10., 2020.03.01., 2021.12.01., 2022.10.01., 2023.10.16.>

③ 간사는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07.10., 2021.12.01.>

④ 본 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겸한다. <신설 2019.07.10.><개정 2021.12.01.>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01.>

② 회의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01.>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07.1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1.>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1.>
3. 장학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1.>
4. 기타 장학금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1.12.01.>

제3장 교내장학금 종류

제8조(종류 및 수혜요건) 교내장학금은 본 대학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우수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장학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종류 및 수혜요건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21.12.01.>

1. 성적우수장학금 :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2. 저소득층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3.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5. 기타장학금 :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 교직원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으로 그 종류 및 수혜요건은 [별표1] 과 같다.

제4장 교외장학금 종류

제9조(교외장학금)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종류 및 수혜요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07.10., 2021.12.01.>

1. 국가 :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개정 2019.07.10., 2021.12.01.>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개정 2019.07.10., 2021.12.01.>
3. 사설 및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 민간단체,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개정 2019.07.10., 2021.12.01.>

제5장 장학금 신청 및 장학생 선발

제10조 (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별 공고된 지정 기일에 해당 장학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장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1.>

② 인원제한이 없고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 없는 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신청절차 없이 대학이 일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제11조(장학생 선발) ①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무상 또는 수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9.07.10., 2020.09.01., 2021.12.01.>

② 확정된 장학생 명단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07.10.>

③ 장학생의 자격은 해당학기에 한한다.

④ 계열(과)별 장학생 배정이 필요한 교내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을 배정한다. <개정 2021.12.01.>

1. 장학생 배정 : 계열(과)의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01.>

2. 1개 계열(과)이 주·야간·전공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는 계열(과) : 별도의 계열(과)로 본다. 다만,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통·폐합, 분리 및 학과명 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한 과로 가정하여 합산하여 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0.> <개정 2020.09.01., 2021.12.01.>

제12조(장학생 선발 제한)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01.>

1. 직전 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1.12.01.>
2. 시험 부정행위자
3. 등록하지 아니한 휴학자

4. 자퇴, 제적자
5.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6장 장학금 지급

제13조(지급방법) 교내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자의 등록금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과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1. 장학금이 등록 이후 확정되는 경우
2. 장학금 지급 목적이 근로 및 봉사 등에 대한 대가성인 경우
3. 장학금 지급 목적이 생활비보조인 경우

제14조(중복수혜) 장학금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 교내 장학혜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큰 장학혜택을 부여하며, 일부 장학금은 중복지급 할 수 있다.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장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한다.

<개정 2021.12.01., 2024.03.01.>

1. 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홍보장학금 등

<개정 2019.07.10, 2020.09.01.>

2. 생활비보조 목적의 장학금 : 생활관장학금, 제천사랑장학금(보건계열), 모범장학금, 헬스케어금연장학금, CAP장학금, 총장장학금, 교수학습혁신센터장학금, 창의인성개발센터장학금 등 <개정 2019.07.10, 2020.09.01., 2022.05.01.>

3. 교외장학금 중 지급 기관 및 단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한 경우 : 공문서 및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 이중수혜를 허용한 장학금으로 [별표2]의 지급목적이 생활비보조 또는 대가성인 장학금 <개정 2019.07.10., 2021.12.01.>

4. 장학위원회 의결 또는 총장이 승인한 경우

제15조(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2조에 해당될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 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환수한다. <개정 2021.12.0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

1. 해당학기 등록금보조 목적의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2.05.01.>
2.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부 칙

- ①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제천사랑장학금(입학장려) 및 지역사랑장학금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제천사랑장학금(2016)은 2016년 2학기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행하던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생선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 ③ (명칭변경)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학생선발위원회는 장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장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적용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20학년도 1학기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장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적용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22학년도 1학기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장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적용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요건 <개정 2019.09.01., 2020.09.01., 2022.05.01., 2023.02.15., 2023.09.01., 2024.03.01., 2024.10.01., 2025.03.01.>

1. 성적우수 장학금

가.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 목적
설립자 장학금	수시	고교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 백분위 3% 이내자	입학학기 등록금 100%	등록금 보조
		고교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 백분위 7% 이내자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인 자	전학기 등록금 100%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인 자	1년간 등록금 100%	
성적우수 장학금	수시	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백분위 10% 이내자	입학학기 80만원 지급	등록금 보조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1등급인 자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2등급인 자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나. 재학 성적우수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학과(전공, 주·야간)별, 학년별 재학인원 대비 장학금 지원 인원						장학금액	지급 목적
		21명 미만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 초과		
성적우수 장학금	석차 1위인 자	○	○	○	○	○	○	등록금의 100%	등록금 보조
	석차 2위인 자		○	○	○	○	○	등록금의 50%	
	석차 3위인 자			○	○	○	○	등록금의 35%	
	석차 4위인 자				○	○	○	500,000원	
	석차 5위인 자					○	○	400,000원	
	석차 6위인 자						○	300,000원	

※ 단, 재학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4.0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재학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학생(유학생)은 글로벌장학금(유학생) 규정을 적용함.

2. 저소득층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 목적
면학장학금 I (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1.51이상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의 50%	등록금 보조
면학장학금 II (저소득층)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8구간(저소득층) 이하인 자 중 선발(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3. 근로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국가근로대응	한국장학재단 수혜자격과 동일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결정	대가성
교내시설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근로 주관부서에서 결정	
학교기업	학교기업에서 근로하는 자		
생활관	생활관에서 근로하는 자		

4. 교직원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교직원자녀 장학금 (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원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퇴직 당시 재학 중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졸업까지 지급(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자녀 및 배우자별 한 학과(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과로 인정)에 한해 지원(동일학과 재입학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100% 5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교직원 장학금 (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학과 재학생으로 본교(재직 및 퇴직) 교직원(산학협력단 소속, 조교 포함)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재학 중 퇴직 시 졸업까지 지원 (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매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5. 기타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교직원자녀 장학금 (재단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외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 세명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퇴직 당시 재학 중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졸업까지 지급(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자녀 및 배우자별 한 학과(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과로 인정)에 한해 지원(동일학과 재입학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100% 5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교직원 장학금 (재단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학과 재학생으로 본교 외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 세명학원)교직원(재직, 퇴직) 중 (산학협력단 소속, 조교 포함)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재학 중 퇴직 시 졸업까지 지원 (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매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DUC사랑	수시 및 정시 입학자 전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제천 사랑	일반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제천시관내 고교 출신자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제외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 목적
장학금	보건 계열	• 당해연도 제천시 관내 고교 졸업자로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입학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단양·영월사랑 장학금		• 2024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단양·영월 관내고교 출신자로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제외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보조
지역사랑 장학금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단양, 충주, 원주, 영주, 안동, 예천, 풍기, 음성, 영월, 횡성, 태백, 정선, 평창, 홍천, 양평, 여주, 괴산, 증평, 진천, 이천, 문경, 봉화, 경기, 광주, 하남, 안성, 평택, 음성, 청주, 춘천, 상주, 의성, 청송, 영덕 소재 고교 출신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만학도 장학금	2018 이전 입학자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과 제외	매학기 등록금의 30%	등록금 보조
만학도 장학금	2019 이후 입학자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매학기 등록금의 20%	등록금 보조
	2022 이후 입학자	• 입학일 이전 인근지역(제천, 단양, 영월, 평창, 원주, 충주, 여주, 영주) 거주자로 30세 이상인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2025 이후 입학자	• 입학일 기준 만28세 이상인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제외)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어학우수 장학금		• 영어 : NEW TEPS 211점(OLD TEPS 450점), TOEIC 550점, TOEFL(IBT) 63점, TOSEL(A) 397점 이상, ESPT 3급, PELT 3급, G-TELP 2등급 (42점) 이상인 자 • 일본어 : JPT 550, 니켄 450점 이상, N1~N4급인 자 • 중국어 : CPT 300점 이상, HSK 3~9급인 자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글로벌 장학금 (유학생)	신입생	국적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이수한 후 본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교환연 수생	국적이 외국인으로 국외대학과 협정에 의해 본 대학에 수학 온 교환 학생		
	편입생	국적이 외국인으로 국외대학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본교 편입한 학생		
	재학생	토픽 3급 소지자(1회에 한함) 토픽 4급 소지자(1회에 한함) 토픽 5급 이상 소지자(1회에 한함)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 상기 내용 중 혜택이 큰 항목으로 적용 감면	수업료의 300,000원 감면 수업료의 400,000원 감면 수업료의 500,000원 감면 수업료의 200,000원 감면 수업료의 300,000원 감면 수업료의 400,000원 감면	

3-4-11 장학규정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전공심화과정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특별장학금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자 등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위원회 결정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보조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보조
모범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 학과장 추천이 있는 자 • 신입생의 입학학기는 지원하지 않음 • 학과(전공, 주간, 야간)별,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인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이하(1명), 21~40명(2명), 41명~60명(3명), 61명~80명(4명), 81명~100명(5명), 101명이상(6명) - 전공심화과정은 재학생 수 관계없이 학년별 1명 	장학위원회 결정	생활비 보조
가족우대 장학금	본교에 형제, 자매, 부부 등 한 가족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국가대응장학금	국가장학금 집행 시 교부금 전액소진 등의 사유로 교비지원이 필요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헬스케어금연장학금	학업증진을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여 성공한 자로 보건진료소에서 선발	장학위원회 결정	생활비 보조
CAP장학금	CAP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성 및 전공지식 함양,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및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각 분야별 취득한 점수 합계가 높은 자로 입학학생취업처에서 선발	입학학생취업처 결정	생활비 보조
공로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	연1회(2학기) 지급 학생회장: 200만원 학생부회장, 의장 : 150만원 상기이하 간부 : 80만원	대가성
	신문방송국 부원	부장 : 50만원 부원 : 40만원	
총장장학금	인근지역 및 자매고교, 홍보전락고교 출신자 중 해당 고교장 추천으로 총장상을 받은 자로 입학학생취업처에서 선발	입학학생취업처 결정	생활비 보조
홍보장학금	학교홍보에 공이 큰 자로 입학학생취업처에서 선발	입학학생취업처 결정	대가성
생활관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 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등급인 자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	생활비 보조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수시 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백분위 3% 이내인 자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인 자 	제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인 자	1년간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1등급인 자	전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댄스특기자로 선발된 자(단, 댄스특기활동을 포기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전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교수학습혁신센터장학금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선발	장학위원회 결정	생활비 보조
복지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 1.51 이상인 장애학생	경중: 매학기 수업료의 20% 중중: 매학기 수업료의 30%	등록금 보조
편입학장학금	편입학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2.0이상인 자 (단, 입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다문화장학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본교에 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매학기 수업료의 20%	등록금 보조
공무원장학금	현직 공무원으로 본교 입학한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매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시니어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70세 이상인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매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전국대회입상장학금	재학 중 당해 학기 전국대회(국내) 및 국외 대회 입상자	차학기 수업료의 30%	등록금 보조
우수유학원장학금	우수유학원 지정 학생	국제교육원 결정	등록금 보조

[별표2] 교외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요건 <신설 2019.09.01., 2022.05.01., 2024.03.01.>

종류		지급목적	수혜자격 및 장학금액
국가	국가장학금(I·II 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I·II 유형),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입학금감축대응장학금,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I·II 유형), 재난피해자지원장학금	등록금 보조	기탁기관 (기탁자) 결정
	희망사다리장학금(취업장려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I 유형(생활비)	생활비 보조	
	국가근로장학금, 산학협력단LINC사업장학금, 산학협력단특성화사업장학금, 산학협력단진로체험사업장학금	대가성	
지방자치단체	제천시공무원임용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등록금 보조	
	제천시장학금(주소이전)	대가성	
사실 및 기타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장학금, 신한은행충북장학회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기업은행장학금, 원우산업기계장학금, 한국라이온스장학금(등록금)	등록금 보조	

3-4-11 장학규정

<p>치과장학금, 안동성소병원장학금, 래어달메디컬코리아장학금, 한일카서비스장학금, 원주제일자동차정비학원장학금, 안동권씨제천청년회장학금, 새세천로타리클럽장학금, LG유플러스장학금,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장학금, 애니카랜드장학금, 간호학과동문회장학금, 충북간호사회장학금, 제천지역건축사회장학금, 우체국장학금, 안동병원장학금, 중앙시스템장학금,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장학금, 한우리특장장학금, 중부VTS장학금, 일동카센터장학금, 의림장학회장학금, ㈜재권장학금, 현대아카데미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코레일충북본부전기처교우회장학금, 교수진기부장학금, 개인기부장학금, 한국라이온스장학금(생활비), 충북지역개발회장학금, 백운장학재단장학금, ㈜덴티움장학금, 오스템임플란트장학금</p>	<p>생활비 보조</p>	
--	-------------------	--